

1995. 9. 22.

개 정 조 례 안 심 사 보 고 서

- 충주시문화상조례중 개정조례안
- 충주시통뫼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총 무 위 원 회

충주시문화상조례증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5. 9. 14. 충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1995. 9. 14.

다. 상 정 일 자 : 제 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 제 1차 총무위원회('95. 9. 18.) 상정,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담당관)

가. 제안이유

기 폐지된 바 있는 충주시민 큰상, 증원군민대상의 수상부분을 수용하여 사회저변 각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범시민과 공직자에게도 수상 기회를 확대하여 근로,윤리부분을 신설하고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조항을 일부 개정하여 문화상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수상대상자 (제2조 제1항)

수상대상자 거주기간 산정기준일을 당해년도 10월 1일 현재에서 문화상 추천 추천요강 공고일 현재로 개정

○ 수상부분 (제3조)

현행 5개 수상부분에 근로,윤리부분 추가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 현행 문화상 수상부문에 사회저변 각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범시민과 공직자에 수상기회를 부여하고 그 명예를 길이 보존하기 위하여,
- 기본 5개 수상부문에 "근로,윤리" 부문을 추가하므로서 모범근로,모범공직, 사회봉사,효행윤리등 타에 귀감이 되는 공적을 지역사회의 귀감으로 삼고자 하는 것으로서 시민권익을 확대하는 사안이며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음.
- 특히, 일하는 충주시민큰상, 증원군민대상 폐지에 따른 수상부문을 수용하므로서 통합 충주시를 대표한 명실상부한 상으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개정조례안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요지

○ 질 의

문화상 수상부문을 굳이 확대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 답 변

충주시민큰상과 증원군민대상이 통합으로 폐지되므로서, 그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며 수상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치 않을 수도 있음.

○ 질 의

문화상은 문화상으로 존치하고 근로,윤리부문을 별도 시상할 의향은?

○ 답 변

본 상의 목적에 향토문화의 창달과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한 자로 되어 있으며 일하는 큰상,대상 2가지를 운영해 본 결과 운영에 문제가 있어 문화상에 근로, 윤리부문을 신설 운영하고자 함.

○ 질 의

심사위원회 구성 위원장에 부위원장이 시장과 교육장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상 심사를 전문가가 아닌 기관장이 하여도 되는가?

○ 답 변

문화상 심사위원회 구성시 문화상조례 준칙을 참고하여 규정하였고, 타시군도 이와 같이 구성된 곳이 많이 있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 안 가 결

7. 붙 임

○ 충주시문화상조례중 개정조례안

조례 제 호

충주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문화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10월 1일”을 “문화상 추천요강 공고일”로 한다.

제3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근로, 유희부문

제7조의 제목 “(회의 및 인사)”를 “(회의)”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매년 1회 10월중에”를 “매년 1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5. 9. 14. 충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1995. 9. 14.

다. 상 정 일 자 : 제 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 제 1차 총무위원회('95. 9. 18.) 상정,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시정과장)

가. 제안이유

아파트, 빌라등 공동주택이 건립되어 주민들이 입주함에 따라 행정구역동
통·반 규모의 불균형함을 재조정하여 주민편익증진과 동행정업무수행에
원활을 기하고져 함.

나. 주요골자

○ 통중설 : 9개통 (호암동 1, 칠금동 4, 연수동 2, 목행동 2)

○ 반중설 : 52개반 (호암동 8, 칠금동 22, 연수동 12, 목행동 10)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지난 연말 8개통 43개반 증설에 이어 금년에도 호암동 동평빌라, 칠금동 현대
아파트, 연수동 부강아파트, 목행동 동산아파트가 완공됨에 따라 통·반중설의
요인이 되어 9개통 52개반을 증설하게 되었으며,

○ 조례 개정에 따른 주민의 부담사항이나 권익과는 무관할 뿐 아니라, 동행정수행의
여건 및 규모상 부득이한 조치로서 주민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고, 적정규모의 행정
구역 조정을 위하여 제안된 통및반설치조례증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요지

○ 없 음.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 안 가 결

7. 붙 임

○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통. 반장의 임용과 위촉)"을 "(통. 반장의 임명과 위촉)"으로하고, 같은조 제2항중 "임용"을 "임명"으로한다.

[별표1] 통의 명칭및 관할구역중 호암동 제1통 제4반 다음에 "제5반 및 제6반"과 제17통 다음에 "제8통"을 칠금. 금농동의 칠금 제4통 다음에 "칠금 제5통 내지 제8통"을, 목행동에 제12통 다음에 "제13통 및 제14통"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5. 9. 14. 충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1995. 9. 14.

다. 상 정 일 자 : 제 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 제 1차 충무위원회('95. 9. 18.) 상정,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시정과장)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건실한 정작을 도모하고,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정책보좌관의 정원 1명이 승인되어,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함.

나. 주요골자

'96년 6월 30일까지 정년을 기한으로 한시정원 정책보좌관(지방행정4급) 1명이 승인됨에 따라 본청 정원 1명이 증원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제19조에 의거 한시정원 1명이 승인되어,

○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의 1호 시본청 정원 504명을 505명으로 1명 증원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 지방자치단체의 정원관리에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 정원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요지

○ 질 의

도승인 시행일이 8월 24일로 되어 있고, 공포날자는 9월 1일로 되어 있는데 의회 승인전에 시장 임의로 발령한 근거는?

○ 답 변

8월 4일 인사발령은 정책보좌관이 아니고, 8월 24일자의 정책보좌관으로 임용키 위한 총무과 대기발령임.

○ 질 의

퇴직일자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책보좌관으로 발령한 이유는?

○ 답 변

공로연수 대상기간이 6개월-1년이내인데 김국장님이 공로연수기간에 접해 있으므로, 실무경험등의 축척된 인력을 활용하고 자문을 받기 위하여 정책보좌관 제도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붙임

○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제2조 본청 "504"를 "505"로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8월 24일부터 적용한다.
- ② (한시정원) 이 조례에 의하여 증원되는 정책보좌관은 1996년 6월 30일까지 시한부로 하되, 그 기한 이내에 해당 정책보좌관이 퇴직(명예퇴직, 공로연수발령 포함)한 때에는 퇴직한 날에 해당정원이 감축된 것으로 본다.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5. 9. 14. 충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1995. 9. 14.

다. 상 정 일 자 : 제 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 제 1차 총무위원회('95. 9. 18.) 상정,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회계과장)

가.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95. 5. 16일 개정 공포되었고, 공유재산관리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코자 함.

나. 주요골자

-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중복된 중요재산의 범위 삭제
-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시 협의규정을 추가
- 수의계약으로 매각 가능한 잡종재산의 범위를 읍.면지역 400㎡를 700㎡까지로 확대
- 관사운영비의 부담을 재조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의 중요재산의 범위가 규정되어 조례 제4조에 중복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는 삭제함이 타당하며,
- 제36조 제1항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집행부에서 12월 31일까지 의회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제출토록 개정함과,
- 공유재산취득처분시 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였고, 또한 변경계획에 대한 의결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였음.
- 제36조의 2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 조항을 신설 하였고, 제38조의 수의계약 매각 처분한도를 400㎡에서 700㎡까지로 확대하였으며,
- 제38조의 2를 신설하여 관리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총괄재산 관리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고,
- 조례 제55조의 관사운영비 부담을 사용자 부담원칙으로 하여 전기요금, 수도요금, 공동관리비 전반에 있어 1급관사(시장전용)만 시예산에서 부담하던 것을 2급관사 까지 포함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과 더불어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조례안 준칙에 따라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개정조례안은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

4. 질의.답변요지

○ 질 의

행정재산의 무상허가 내지 관리는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가?

○ 답 변

교환, 무상대부, 행정재산 무상사용허가는 시기가 일정치 않고 물량도 한정되어 있으며 수시 발생하는 사항으로 의회 의결까지 받게 되면, 민원인한테 큰 불편을 주게 될 수 있음.

○ 질 의

음.면의 수의계약 범위를 700㎡로 한정한 이유는?

○ 답 변

전국적으로 중앙에서 책정된 기준임.

○ 질 의

2급관사의 전기,수도사용료등을 시의 예산에서 집행하는 이유는?

○ 답 변

전국적으로 시달된 준칙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임.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부 록

○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36조제1항중 "시장이 전년도 12월 31일까지"를 "시장이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로, "공유재산의 취득.처분.교환.무상대부.행정재산의 무상사용 허가 및 관리"를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로 하고 "변경계획을 작성하여"를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기전까지"로 하며, 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하고, 제4항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4항을 제2항으로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에서 총괄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 ①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재산관리관은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38조제1호중 "읍.면지역에서는 400㎡ 이하의 토지"를 읍.면지역에서는 700㎡이하의 토지"로 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 (공유재산매각승인)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코자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5조제5호, 제7호, 및 제8호 중 "(단, 1급 관사 한함)"을 "(단, 1급, 2급 관사에 한함)"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